

사회봉사센터 규정(4-1-10)

개정 2019.02.27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사회봉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본 센터는 본교의 건학이념인 “참된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”을 실천하고, 나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끌어갈 실용·휴먼 리더를 양성하는데 있다.

제3조(업무) 본 센터는 본 규정 제2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회봉사사업의 총괄 계획 수립
2. 사회봉사 교과목·마일리지제 및 인증제 운영
3. 사회봉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
4.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5.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연구·개발
6.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홍보·출판
7.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총단장) 봉사단의 총단장은 총장으로 하며, 봉사단을 대표한다.

제5조(센터장) ① 본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진다.

제6조(구성원) 센터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직원, 행정조교, 연구원 등 실무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사회봉사단) 사회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,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단(재능기부단, 또래상담봉사단, 국내(교내)봉사단)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설치) 본 센터의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전임교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9.02.27.)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
2. 사회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사회봉사교과목 운영

제12조(교과운영) ①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한다.

② 2009학년도~2012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, 그 밖의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.

③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한다.

④ 사회봉사 교과목은 2학점(6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)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.

제13조(성적장학금)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학기 사회봉사 인정기간 중 사회봉사 활동을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, 센터에서 관리하는 사회봉사 전산시스템에 활동 내용을 10시간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02.27.)

제14조(이수시간 및 인정과목) ① 사회봉사활동의 이수 시간은 해당 사회봉사기관에서 인정한 시간으로 하며, 각기 다른 사회봉사기관에서 시행한 봉사활동을 누적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② 사회봉사활동의 인정 교과목은 사회봉사 I, 사회봉사 II로 한다.,

③ 사회봉사 학점인정은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후 기본소양교육 2시간과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이 충족된 경우 인정하며, 등급은 Pass로 한다. 단, 기준 봉사활동 시간을 초과한 경우, 교육과정상 교양 필수 대상 학생에 한하여 사회봉사 마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.(개정 2019.02.27.)

④ 사회봉사 100시간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사회봉사활동내역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⑤ 09~12년도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과 장애학생은 졸업 시 까지 사회봉사 1학점을 이수해야한다.

⑥ 장애학생 중 1~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은 필수교과목 이수를 면제한다.

⑦ 그 외 봉사활동을 이수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회봉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제 또는 교육으로 대체한다.

⑧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, 시간제등록생은 사회봉사활동을 면제한다.

제15조(운영방법) ① 사회봉사는 매년 초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은 사회봉사를 시행할 기관(단체)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, 대학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관(단체) 및 해당 프로그램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③ 사회봉사 이수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연도의 사회봉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,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대체인정의 경우 해당 증빙내역으로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.

④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 결과를 일괄 인정하여 공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개인별 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.

⑤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

⑥ 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재학 및 방학 중 활동한 사회봉사 실적을 전산으로 누적 입력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며,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.(개정 2019.02.27.)

⑦ 센터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사일정의 직전학기 기말고사 종료 다음날부터 현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진행한 봉사실적만을 해당학기 봉사로 인정 한다. 단, 학기 중 학사일정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전 학사일정에 따른다.(신설)

2019.02.27.)

제16조(종류 및 이수범위) 사회봉사활동은 교내봉사, 교외봉사, 대체인정으로 구분한다.

① 교내봉사는 대학 내에서 행하는 공익 목적의 봉사활동에 한하며, 매 학기 초 사회 봉사활동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총장의 승인 하에 봉사활동 이수범위를 지정한다.

② 교외봉사는 대학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봉사활동으로서 다음과 각 호에 한하여 이수범위를 지정한다.

1. 국가 기관 및 관공서
2.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장애복지, 노인복지, 아동복지 기관 및 단체
3. 국제기구, NGO단체, 시민/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
4. 병원, 의원 등 의료시설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
5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, 단체 및 프로그램

③ 대체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한다.

1. 헌혈은 1회당 10시간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1회로 제한한다.
2. 소년소녀가장,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활동 할 경우 1가정 당 15시간을 인정한다. 단, 이 경우 센터에 고지가 된 경우만 인정한다.
3. 삭제(2019.02.27.)
4. 공익 향상에 기여하여 센터가 인정하는 외부표창을 받은 경우 30시간으로 인정한다.(개정 2019.02.27.)

제 5 장 학생지도

제17조(학생지도) 본 센터는 학생들이 질 높은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에 대하여 단체 및 기관과 조정하고 협의하여 봉사활동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게 지도한다.

제 6 장 재정 및 기타

제18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09학년도~2012학년도 입학자는 사회봉사 규정에 의한다. 단, 군사경찰대학과 글로벌경영대학 소속의 2012학년도 입학자는 사회봉사 I, 사회봉사 II를 공동체생활 I, 공동체생활 II로 대체한다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